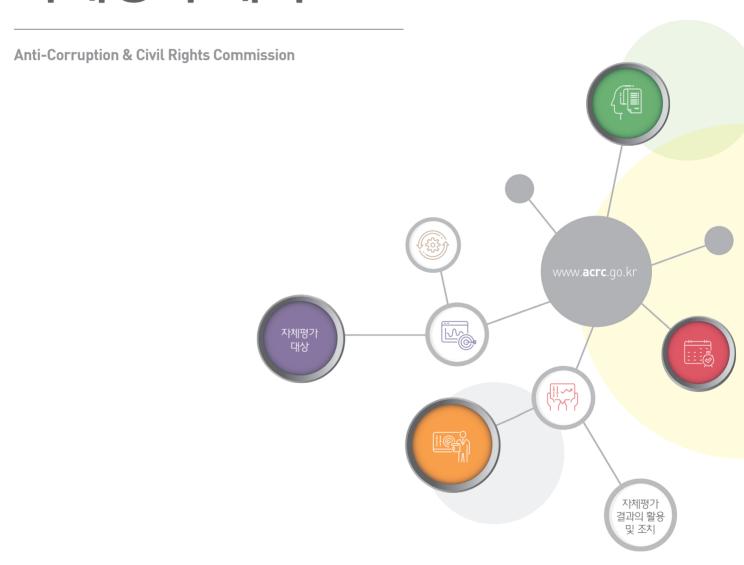


2022년도 자체평가 계획





202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 계획, 2022. 3.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044-200-7119)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506호

목 차

1. 2022년도 자체평가 기본방향

□ 국정과제 중심 평가로 성과창출 견인

-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의 **적극적** 이행을 위한 평가체계 마련
 - * 정책집행 부분 평가 강화(배점 20점→25점, 평가지표 3개→4개)
- '정책성과·효과' 중심 평가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 창출 독려
 - * 세부평가항목 중 '정책효과' 항목의 배점을 전년과 동일하게 30점으로 유지

□ 평가체계 합리화·환류 강화로 성과관리 강화

- **자체평가 세부 평가지표**는 **특정평가 평가항목과 연계**하여 설정함 으로써 특정평가-자체평가 간 연계 강화
 - *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에 '이행노력도', '기관장 노력 지원 정도' 평가지표 신설
- 전년도 **자체평가 부진과제***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집중관리**
 - 미흡과제 컨설팅, 담당자 교육, 과제 이행상황 자체평가위원회 점검 보고(반기별) 등
 - * I-2-③ 제도 속에 내재된 구조적 부패·불공정 유발요인 개선

2. 수립 경과

- 자체평가위원회 및 부서별 의견수렴(3.15~3.25)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3.29)

< 참고 > 2022년도 평가항목 주요 변경사항

「2021년도 평가항목」 「2022년도 평가항목」

항목	평가지표	배점
1. 정책설계	1. 성과지표 적절성	10
(20)	2. 과제수단 적절성	10
	1. 추진계획 준수정도	2
2. 정책집행 (20)	2. 상황변화 대응성	10
	3. 협업 노력도	8
	1.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20
3. 정책성과 및 효과 (60)	2. 정책효과	30
	4. 정책환류 성과	10
가점 (2)	국민참여 정책평가	2

항목	평가지표	배점
1.	1. 계획수립의 적절성 ^(신규)	10
정책설계 (15)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내용변경)	5 (5↓)
	1. 추진계획 준수 정도	2
2. 정책집행	2. 이행 노력도 ^(신규)	15
성색십행 (25)	3. 상황변화 대응 노력도	5 (5↓)
	4. 기관장 노력 지원 정도 ^(신규)	3
	1.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내용변경)	20
3. 정책성과 및 효과 (60)	2. 정책효과	30
	4. 정책환류 성과 ^(내용변경)	10
가점 (2)	국민참여 정책평가	2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제7기: 2020. 5. 1. ~ 2022. 4. 30.)

○ 소위원회 2개, 외부전문가(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15명 및 내부전문가 (기획조정실장) 1명으로 구성

구분	성명		소속·직위	주요경력
위원장		윤종설 (61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現)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위원 ■(現) 법무부 자체평가 위원장 ■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심재승 (63년)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前)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前)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영국 버밍험대 공공정책학 박사
		임준형 (68년)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現) 조달청 자체평가 위원 ■(現)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前) 국조실 국정과제 평가위원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행정학 박사
		이옥화 (57년)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	■(前)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前) 교육부 자체평가 위원 ■(前) 문화재청 자체평가위 위원 ■(現) 문체부 공공기관 문화정보화수준평가위원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교육공학 박사
외부 위원		이주희 (72년)	청주대 법학과 교수	■(現) 충청북도 적극행정 지원 위원 ■(現)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 위원 ■(現) 청주지방검찰청 상고심사 위원 ■스위스 바젤대 법학 박사
		김찬동 (65년)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現)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 위원 ■(現) 대전시 분권협의회 위원장 ■(現) 자치분권위 중앙권한이양 제3전문위원회 위원 ■일본 동경대 정치(행정)학 박사
		박수정 (70년)	행정개혁 시민연합 사무총장	 ■(現) 기재부 국고보조금관리위원 ■(現) 산자부 기타공공기관 운영위원 ■(現) 행안부 자체평가 위원 ■(前) 기재부 공기업경영평가단 위원 ■이화여대 행정학 석사
		홍진이 (65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수	 ●(現) 전라북도 적극행정심의위원회 위원 ●(現)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위원 ●(現) 전기안전공사 청렴옴부즈만 ●(現) 경기도의회 교육연수위원회 위원 ●(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일본 메이지대학 정치학 박사

구분	성명		소속·직위	주요경력
		주재복 (64년)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	■(現) 한국갈등학회 회장 ■(現)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前) 국회 입법지원단 입법지원위원 ■(前) 행안부 민원제도 평가위원 ■고려대 행정학 박사
	3	최태현 (73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現) 과기부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민관합동위원회 위원 ■(前)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前) 행안부 지방정부혁신평가단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행정학 박사
		이재은 (66년)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前)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前)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위원 ■(前) 대통령실 국가위기상황센터 정책자문위원 ■(前) 국토교통부 자체평가 위원 ■연세대 행정학 박사
외부 위원		강영주 (77년)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 소장	■(現)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 ■(現) 자치분권위 중앙권한이양 제3전문위원회 위원 ■(現) 한국조직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이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박사
		김선혜 (65년)	(사)갈등해결과대화 상임대표	■(現) 은평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現) 법무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現) 과기정통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기술교육대 인력개발학 석사
		박영만 (65년)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現)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現)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위원회 전문위원 ■경북대 법학 박사
		이연숙 (65년)	법무법인 로플러스 변호사	■(現) 법제처 자체평가위원 ■(現)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연세대 법학 석사
내부 위원		임윤주 (69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前)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前)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前) 권익위 대변인

ㅇ 분야별 전문가 현황

분야별 전문가							
교수	연구원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기타 (공공기관)	소계	내부위원
7명	3명	-	2명	2명	1명	15명	1명
(44%)	(19%)	-	(13%)	(13%)	(6%)	(100%)	1 1 6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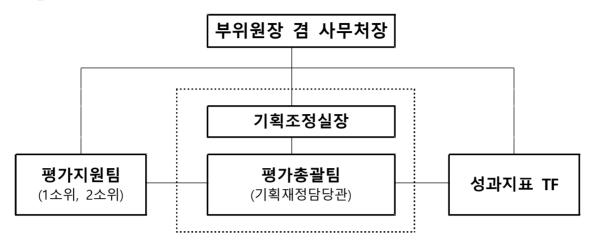
- (운영규정)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권익위 훈령 제215호)」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
- (의사결정)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운영)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영상/서면회의 실시

□ 위원회 구성·운영

- (전체위원회) 위원장, 각 소위원장, 내부위원을 포함한 자체평가 위원 및 간사(기획재정담당관) 등으로 구성
 - 자체평가 방향·주요 계획·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심의·의결
- (주요정책부문 소위원회) 분야별 전문성, 과제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위별 위원 구성
 - 각 위원은 1개 과제씩 정책 컨설팅 실시(정책자문·지표 검토 등)
 - * 위원별 컨설팅 과제는 【붙임1】참조
- (재정사업·행정관리역량부문 소위원회) 분야별 전문성, 기재부· 행안부 지침을 고려하여 일부 위원을 위촉하여 실시
- (성과지표 T/F) 자체평가위원 중 정부업무평가에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
 - 목표치 검토·평가 및 성과지표 신규개발 및 수정 지원

3. 평가총괄팀 및 평가지원팀의 구성·운영

□ 운영체계



□ 구성현황

구분	팀원	역할
	기획조정실장	o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총괄 o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등
명기초과티	기획재정담당관	※ 세부추진사항 - 과제 추진실적 점검(분기별)
평가총괄팀	백현수(기획재정담당관)	- 전체회의 개최 - 소위원회 개최 지원(수시)
	변규태(기획재정담당관)	-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지원(수시) - 기타 평가관련 사항 지원 등
	박을미(청렴정책총괄과)	o 평가대상 과제 추진실적 점검 지원 o 소위원회 및 현장조사 지원
	한세근(행동강령과)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김수진(청렴연수원)	※ 세부추진사항 -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분기별)
제1소위	김동주(민간협력담당관)	- 소위원회 개최(수시) - 정기자료(보고서, 증빙자료 등)
평가지원팀	이진아(보호보상정책과)	작성·제출(수시) - 기타 평가관련 사항 지원 등
	한명진(심사기획과)	
	김시형(공공재정환수제도과)	
	이종호(부패영향분석과)	

구분	팀원	역할			
	이현지(민원조사기획과)	o 평가대상 과제 추진실적 점검 지원 o 소위원회 및 현장조사 지원			
	김남영(정부합동민원센터)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 세부추진사항			
제2소위	최현민(행정심판총괄과)	-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분기별) - 소위원회 개최(수시)			
평가지원팀	옥선애(국민신문고과)	- 평가자료(보고서, 증빙자료 등) 작성·제출(수시) - 기타 평가관련 사항 지원 등			
	김연주(민원정보분석과)	11312213123			
	임석빈(제도개선총괄과)				
	윤종설 자체평가위원장	ㅇ 성과지표 검증 및 신규 지표 발굴			
	임준형 자체평가위원	지원 ㅇ 성과지표 적절성 항목 평가 등			
성과지표 TF	강영주 자체평가위원				
	이도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우하린 한국행정연구원 팀장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부문

□ 평가대상: 20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14개 관리과제

* 2개과 이상 합동과제일 경우, 주관부서(* 표시)가 과제총괄

번호	관리과제명	주요 내용	담당부서
I. 반부피	대·청렴시스템의 질적	보고도화로 부패관행을 근절한다	청렴정책총괄과
1. 반부피	대·청렴정책을 혁신ㅎ	ト고,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청렴정책총괄과
I -1-①	부패방지 정책·제도의 재정비	·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운영 · 감사관 회의 확대 · 새로운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시행 · 개편된 '종합청렴도'평가 시행	* 청렴정책총괄과 청렴조사평가과
I -1-②	공직자 행위규범 강화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운영 기반 구축 및 교육·홍보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공직자 행위규범 내재화를 위한 전략적실태점검 강화 	* 행동강령과 청탁금지제도과 이해충돌TF
I -1-3	청렴교육 확대	 · 공기업 등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신설·운영 · 청렴리더십 제고를 위한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내실화 ·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지속 교육 	청렴연수원
I -1-④	민간·국제분야 협력 강화	· 반부패 거버넌스 확립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공공 부문 등 자율적 반부패 역량 강화 지원 · 반부패 정책 성과의 국제사회 공유 및 개도국 전파	* 민간협력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2. 선제적	심사기획과		
I -2-①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신고자 보호 제도 강화 및 경제적 지원 확대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신고자 보호·보상사건 신속 처리 및 대응 강화 	* 보호보상정책과 신고자보호과 신고자보상과
I -2-②	부패·공익침해 현안 적극 대응	 부패·공익침해 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주요사건 관리 강화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사각지대 관리 강화 청렴포털 시스템 고도화 및 이용 확대 	* 심사기획과 부패심사과 공익심사팀
I -2-3	공공재정 누수 방지	 · 공공재정환수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정수급 취약분야 개선 · 공공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행실태점검 결과 대국민 공개 추진 ·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사건 적발 강화 	* 공공재정환수제도과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I -2-④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 불공정·불합리한 공공기관 사규 개선 ·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향상 · 제개정·현행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 부패영향분석과 채용비리근절추진단 (청탁금지제도과)

번호	관리과제명	주요 내용	담당부서
표. 국민의	기 고충을 해결하여	국민권익을 보호한다.	민원조사기획과
1. 국민의	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로 해결한다.	민원조사기획과
П-1-①	국민고충 적극 해소	일상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국민고충 해소집단민원 조정을 통한 사회 갈등 해소효율적·전문적 고충민원 처리체계 확립	민원조사기획과
I I-1-②	한 번에 편리하게 민원상담·처리	·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종합민원상담 제공 · 빠르고 편리한 국민콜110 운영	정부합동민원센터
Ш-1-③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 행정심판제도 속 제도를 활용한 권익구제 강화 · 신속한 재결로 신뢰받는 행정심판 · EASY 행정심판 환경 구축	행정심판총괄과
2. 국민의	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여 정책을 개선한다.	제도개선총괄과
П-2-①	국민 중심 범정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 운영	다양한 국민의 행정 참여 보장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제도개선 추진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국민신문고과
П-2-②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정책개선 지원	 민원데이터 기반의 정책개선 및 민원 해소 대응 협업·개방을 통한 민원데이터 이용 활성화 데이터 품질관리 및 시스템 기능 개선 	민원정보분석과
П-2-3	부패방지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구조적 부패관행·제도의 근원적 개선 · 국민고충·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사후관리를 통한 이행력 확보	*제도개선총괄과 경제제도개선과 사회제도개선과 적극행정TF

□ 평가 제외

- 6개 공통·지원 부서* 및 16개 민원·심판 부서 제외**
- *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법무담당관,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 ** 10개 민원과·팀, 6개 심판과·팀

2. 재정사업 부문

□ 평가대상

-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일반재정, 정보화사업)이 평가대상
 - '22년도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단위사업)를 기준으로 기재부와 협의하여 대상과제 선정
 - 다만, 인건비·기본경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단위사업은 제외

단위사업	소관부서
① 청렴권익 문화 확산	홍보담당관
② 청렴권익 대내외 협력 강화	국제교류담당관 / 민간협력담당관 / 청렴연수원
③ 국민고충해소	민원조사기획과
④ 반부패 청렴정책 강화	청렴조시평기과 / 부패영향분석과 / 청렴연수원 / 행동강령과 / 보호보상정책과 / 신고자보호과 / 신고자보상과 / 공공재정 환수제도과 /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청탁금지제도과
⑤ 행정심판	행정심판총괄과
⑥ 부패·고충 제도개선 및 국민소통 활성화	제도개선총괄과 / 정부합동민원센터
⑦ 청렴권익 행정 정보화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 국민신문고과

3. 행정관리역량 부문

□ 평가대상

○ 조직·인사·정보화 분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통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

평가대상 분야	소관부서
조직 관리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인사 관리	운영지원과
정보화 관리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 판단기준	배점
1. 정책설계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과제 추진계획의 충실성 ○ 과제수단의 적합성	10
(15)	2.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산출·결과 지향성, 측정가능성, 복합지표 여부 등	5
	1. 추진계획 준수 정도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 준수 여부	2
2. 정책집행	2. 이행 노력도	● 투입 노력●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협업 노력	15
(25)	3. 상황변화 대응 노력도	○ 여건·상황변화 모니터링 충실성 ○ 갈등발생 예방/해소 등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5
	4. 기관장 노력 지원 정도	○ (부)기관장 현장방문, 정책소통, 국회설 명 등 지원 정도	3
3.	1.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 목표치 달성 정도	20
정책성과 및 효과	2. 정책효과	○ 당초 의도한 효과 ○ 장기적 효과	30
(60)	3. 정책환류 성과	○ '21년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반영 ○ '22년 중간점검 결과의 정책개선 반영	10
3개 항목		9개 지표	100

-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2점)
- ※ 평가지표별 평정방법 및 세부 측정기준은 【붙임2】참조

2. 재정사업 · 행정관리역량 부문

○ 부문별 평가총괄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평가지표 및 기준 확정 예정

V

자체평가 방법 및 일정

1. 중간점검

□ 점검기간

구분	시기	내용	대상기간
1차 점검	5월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점 마련	′22.1.1 ~ 4.30
2차 점검 (상반기 점검)	7월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점 마련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과제별 주관 부서장 보고	′22.1.1 ~ 6.30
3차 점검	10월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점 마련 ※ 특정평가 실적보고서 서식 활용	′22.1.1 ~ 9.30

□ 점검내용

- ㅇ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중간실적 점검
- 미흡과제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발굴, 조치계획 강구

□ 점검방법 및 결과반영

- 과제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과제별 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근거로 점검 실시
 - * 2차 점검(상반기점검, 7월)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1차 점검(5월), 3차 점검(10월)은 권익위 내부점검으로 실시(정기 정책컨설팅 병행)
- ㅇ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추진상황 및 이행여부를 점검
 - 과제별 점수·순위가 아닌, '정상추진/사전대비 필요' 여부 점검
- 점검 시 발굴된 개선·보완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본 평가 시 '정책환류 성과'로 반영

2. 자체평가

- □ **평가일정 : '23. 1. 9.** ~ **'23. 1. 13.** ('22.12.31. 기준으로 평가)
 - ※ 단, '정책설계' 부분은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우선 평가
 - ※ '23. 1월 초 실적보고회와 평가 병행
- □ 평가대상: '2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14개 관리과제

□ 평가절차 및 방법

< 상반기 평가 >

- (정책설계 부문) '계획수립의 적절성'은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6월 예정) 이후 평가, '성과지표의 적절성'은 성과지표 TF에서 평가(4월)
 -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6월) 시 성과지표 변경이 있을 경우, '23.1월초 실적보고회시 평가

< 하반기 평가 >

-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과제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과제별 실적 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한 후 평가총괄팀 취합
 - * 과제별 실적보고서 양식 【붙임3】참조(과제별 최대 30쪽)
-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 자체평가위 소위원회별로 과제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 과제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
 - * 소위원회별 평가 참여인원이 많지 않을 경우, 전체 위원이 전체 과제 평가
- (평가 실시) 자체평가위원은 각 소위별 과제에 대해 개별 평가
 - * 단, 본인이 컨설팅한 과제는 평가 공정성을 위해 평가 제외
 - * 자체평가위원장은 2개 소위 과제를 모두 평가

- **(결과 집계 및 이의신청)** 위원별 점수 집계 후 소관 부서에 회람 하여 평가항목별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실시
 - * 평균-표준편차일치법을 통해 소위 간 편차를 보정하여 평가 공정성 제고
 - * 평가결과(안) 부서별 공개 → 이의신청 접수 → 위원별 재평가 → 결과 통보
- (결과 의결) 최종 평가결과에 대해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성과평가 반영)** 과제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점수 산출 및 성과평가 반영
 - *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점수는 성과지표 소관 부서 점수에 반영
 - * 다수의 관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설정한 과제별 반영비율에 따라 부서 점수 산출

3. 평가결과 및 등급산출

□ 자체평가 결과 등급분포 기준

ㅇ 평가결과는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배분

순위 누적 [*]	등급	과제 수(순위 / 총 14개)
상위 5%이내	1등급(매우 우수)	1개(1위)
5%초과 ~ 25%이내	2등급(우수)	2개(2~3위)
25%초과 ~ 40%이내	3등급(다소 우수)	2개(4~5위)
40%초과 ~ 70%이내	4등급(보통)	4개(6~9위)
70%초과 ~ 85%이내	5등급(다소 미흡)	2개(10~11위)
85%초과 ~ 95%이내	6등급(미흡)	2개(12~13위)
95%초과	7등급(매우 미흡)	1개(14위)

^{*} 순위 누적 % = (순위/총 과제 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23.1월)

- 확정된 평가등급을 반영하여 국조실 작성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 작성 및 시스템 입력(평가총괄팀)
- 결과보고서에 평가대상 과제별 성과달성 또는 미달성 원인분석 및 조치사항, 평가지표별 정성적 평가결과 등을 반영

□ 자체평가 결과공개

- 국회 상임위(정무위)에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를 통해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23.2월)
 -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정책·평가' 게시판

4.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요내용
계획 수립	3월	☞ 20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안) 및 자체평가계획(안) 수립 ☞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 및 '성과지표 적절성'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1차 중간점검	5월	☞ 4.30. 기준 이행상황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실시(내부)
계획 수정	6월	☞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성과관리 역량강화 교육	6월	☞ 부서별 평가담당자 대상 성과관리 및 평가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상반기 평가	6월	☞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가
2차 중간점검 (상반기점검)	7월	☞ 6.30. 기준 이행상황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실시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3차 중간점검	10월	☞ 9.30. 기준 이행상황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실시(내부)
실적보고회 및 평가 실시	′23.1월	☞ 12.31. 기준 실적보고회 개최 및 평가항목별 종합 평가 실시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자체평가결과 확정	′23.1월	☞ 평가 결과 집계, 이의신청,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자체평가결과 공개	'23.2월	☞ 평가결과 위원회 홈페이지 공개 및 국회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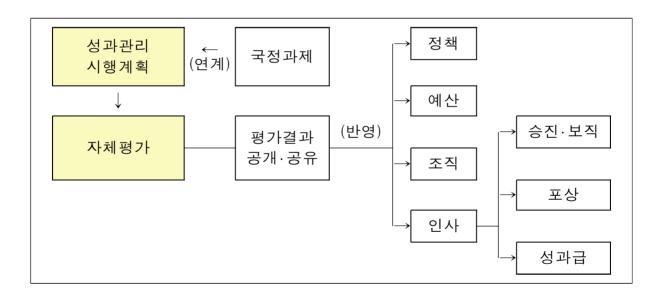
[※]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자체평가위원회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점검 실시여부 등 결정

VI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 평가결과 공유를 통해 우수사례는 적극 확산시키고, 미흡과제의 개선점을 발굴함으로써 정책성과를 제고
- 평가결과를 **정책, 예산, 조직 등에 적극 활용**하고, 문제점의 진단 ·분석을 통해 업무 전반에 걸친 개선과제 발굴·추진
- **부서·개인 성과평가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전략목표·주요정책과 부서·개인의 목표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성과 제고 동기부여



2.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정책 환류

- 상반기 점검결과는 하반기 정책 추진 시 반영, 하반기 최종 점검·
 평가결과는 '23년도 업무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에 반영
 - 주기적 점검 및 정책컨설팅 → 정책환류 평가 → 계획 반영

-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
 -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평가 취약항목 정량분석 및 전문가의 특별 컨설팅을 통한 정성분석을 병행하여 정책 미비점 보완
 - * ('21년 부진과제) 제도 속에 내재된 구조적 부패·불공정 유발요인 개선(I-2-③), 청렴교육 확대를 통한 청렴의식 제고(I-1-③),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Ⅲ-2-①)

□ 예산 환류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예산투입 필요성 재검토, 사업 조정 및 추진 방식 개선 등에 활용해 **중기재정계획 및 차기 예산 편성과 연계**
 - 7개 단위사업에 대해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별 평가 후 등급화
 - * (평가지표) ①사업의 적정성(10), ②집행률 제고 노력(30), ③성과목표 달성도(40), ④사업성과의 우수성(10), ⑤제도개선 노력(10)
- ㅇ 평가결과 우수과제는 차기 예산편성 시 반영비율을 확대
 -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 및 성과관리 개선계획 작성** 등 실시

□ 조직 환류

- 평가결과 성과가 부진하거나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부서의 경우 조직역량 등에 대한 정밀분석·진단* 실시
 - * 직무만족도, 몰입도, 성취의욕, 부서장 리더십 등에 대한 진단 실시
- 조직역량 진단결과를 인력 배치·전환,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조직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조직 효율성 제고

3. 평가결과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계획

- 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해 위원장 포상 수여('23.상반기)
- ㅇ 성과연봉 또는 성과급 지급 결정시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
 -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성과평가(100%) 중 자체평가결과(52.0%) 반영
 - (4.5급 이하 직원) 성과평가(100%) 중 자체평가결과(45.5%) 반영
 - * '22년도 성과평가계획을 통해 확정될 예정

['21년 성과평가 계획에 평가결과 반영 내용]

- ▲ (과장급 이상) 개인성과평가시 조직성과평가 80% 중 자체평가결과를 65% 비중으로 반영
- ▲ (4.5급 이하 직원) 개인성과평가시 조직성과평가 70% 중 자체평가결과를 65% 비중으로 반영

과장급 이상	조직성과평가(80%) 자체평가(65%)		직 무수 행 능력평가(20%)	조직문화개선 노력도(-7%)	평가 위원회 (5%)
복수직 4급	조직성과평가(70%) 자체평가(65%)		개인 실적평가(30%)		평가 위원회 (5%)
5급 이하	조직성과평가(70%) 자체평가(65%)		개인 실적평가	·(30%)	평가 위원회 (5%)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자체평가위원회, 상반기 점검회의 개최 등에 따른 평가결과 및 우수사례 전파(수시)
 - 평가결과, 우수사례, 보완사항 등은 모든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업무망을 통해 공유
- 성과관리 담당 직원 대상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교육·설명회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확산
 - 성과관리 역량강화 교육시(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 교육

붙임1 관리과제별 컨설팅 위원

과제명	담당
I-1. 반부패·청렴정책을 혁신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① 부패방지 정책·제도의 재정비	임준형
② 공직자 행위규범 강화	김찬동
③ 청렴교육 확대	이옥화
④ 민간·국제분야 협력 강화	홍진이
I-2. 선제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부패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용	응한다.
①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이주희
② 부패·공익침해 현안 적극 대응	이재은
③ 공공재정 누수 방지	박수정
④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윤종설
Ⅲ-1.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① 국민고충 적극 해소	김선혜
② 한 번에 편리하게 민원상담·처리	주재복
③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이연숙
표-2.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정책을 개선한다.	
① 국민 중심 범정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 운영	강영주
②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정책개선 지원	최태현
③ 부패방지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박영만

붙임2

주요정책부문 평가항목 및 세부측정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 판단기준	배점
1. 정책설계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과제 추진계획의 충실성 ○ 과제수단의 적합성	10
(15)	2.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산출·결과 지향성, 측정가능성, 복합지표 여부 등	5
	1. 추진계획 준수 정도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 준수 여부	2
2. 정책집행	2. 이행 노력도	● 투입 노력●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협업 노력	15
(25)	3. 상황변화 대응 노력도	○ 여건·상황변화 모니터링 충실성 ○ 갈등발생 예방/해소 등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5
	4. 기관장 노력 지원 정도	○ (부)기관장 현장방문, 정책소통, 국회설 명 등 지원 정도	3
3.	1.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ㅇ 목표치 달성 정도	20
정책성과 및 효과	2. 정책효과	○ 당초 의도한 효과 ○ 장기적 효과	30
(60)	3. 정책환류 성과	○ '21년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반영 ○ '22년 중간점검 결과의 정책개선 반영	10
3개 항목		9개 지표	100

※ 가점 : 국민참여 정책평가(2점)

1-1. 계획수립의 적절성(10점, 정성)

- 관리과제의 목표 달성 및 원활한 과제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의 적절성 정도를 평가
 - a) 과제 추진계획의 충실성
 - **ⓑ** 과제수단의 적합성

평정방법

- ① a,b 모두 '상'일 때 : 매우우수
- ② ②,⑤ 중 1개 '상', 1개 '중'일 때 : 우수
- ③ (a),(b) 모두 '중'일 때 또는 1개 '상', 1개 '하'일 때 : 보통
- ④ a,b 중 1개 '중', 1개 '하'일 때 : 미흡
- ⑤ ⓐ,ⓑ 모두 '하'일 때 : 매우미흡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세부 측정기준

- ② 과제 추진계획의 충실성(상/중/하): 대내외 여건 분석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해 추진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된 정도
 - 관련 통계, 사례, 외부환경 변화, 갈등요인 등을 사전조사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과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이 충실히 작성되었는가?
 - 관리과제 추진에 필요한 분기별 일정이 구체적인가?
- (b) **과제수단의 적합성**(상/중/하) : 세부사업 등 관리과제의 하위 과제 수단이 과제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정도
 - 과제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 등을 망라하는 등 포괄적으로 설정하였는가?
 - 과제목표 달성에 충분할 정도로 과제수단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평가근거

ㅇ 당해 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1-2. 성과지표의 적절성(5점, 정성)

○ 성과지표가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성과지표 TF에서 평가

평가항목 배점 매우우수 우수 미흡 매우미흡 보통 대표성 30 30 25 20 10 15 적 극 성 30 25 20 10 30 15 산출 결과 지향성 20 20 17 14 11 8 측정가능성 10 측정가능성, 복합지표 여부는 평가총괄팀에서 복합지표 여부 평가 10

평정방법

구분	90점 초과	90점 이하	80점 이하	70점 이하	60점 이하
점수	5	4	3	2	1

* 가점(+0.5점) : <별첨1>의 13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성과지표를 1건 이상 설정하였는지 여부(단, 5점을 초과할 경우 5점으로 반영)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시된 지표는 관리과제의 주요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해당 관리과제의 핵심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가? 대표성 * 관리과제 핵심목표와 연관성 여부, 과제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지 여부, 성과지표의 정의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시된 목표치가 과거 실적치(3년간)를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제시 되었는가? 적 극 성 * 정량적 판단이 곤란하거나 신규사업인 경우, 유사사례 통계, 대내외 여건, 통상적 기대수준, 과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리과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출·결과 지표인가? 지향성 * 투입·과정 지표를 지양하고 산출·결과지표로 구성하였는지 여부 공식적·객관적 수치로 확인 가능한 지표를 사용하였는가? 측정가능성 평가시점('23.1월초) 기준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인가? * 부서 자체조사 등을 지표로 설정한 경우, 근거자료 여부 투입·과정지표 2개 이상을 묶어서 하나의 복합지표로 구성하였는가? 복합지표 여부 * 복합지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단일지표로 구성

세부 측정기준

>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시 추가·변경되는 지표에 대한 평가는 '22년도 자체평가시 별도평가

평가근거

ㅇ 성과지표 설명자료

< 별첨1 > 13개 사회적 가치의 주무부처와 주요 의미

사회적 가치	주무부처	주요 의미
인권	법무부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안전	행안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건강·보건	복지부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 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노동	고용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고용안정 등
사회통합	복지부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상생협력	중기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
일자리	고용부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행안부 분권위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지역경제	산업부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기업의 사회적책임	산업부 중기부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환경	환경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참여	행안부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시민사회	총리실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 별첨2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판단기준 예시

아래 판단기준은 성과지표TF 위원에게 제공하는 참고용 판단기준이며, 정책환경, 과제성격 등을 종합고려하여 정성평가

① 최근 실적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 추세인 경우
 - 추세치 수준을 반영한 경우 : 우수
 - * 추세치 : 2년간 평균 증가율 (예: '19~'20년 5%상승, '20~'21년 7%상승한 경우 평균 증가율인 6%가 전체 추세치임)
 - * 실적 기준이 만족도 등과 같이 상승 한계치가 존재하는 항목일 경우 이를 고려 하여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판단

②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보통
- 최근 3년간 실적치 중 가장 높은 실적치 보다 높게 설정한 경우 : 우수

③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

- 하락 후 상승국면일 경우 상승 추세치 수준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보통
-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 3년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보통

④ 실적치가 2년간만 있는 경우

- 상승국면일 땐 상승세 반영 시 : 보통
- 하향국면일 땐 가장 높은 실적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보통
- ⑤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상승률이 전년대비 **10**%이상 높게 설정한 경우 : 보통
 - * (예시) : 5% → 5.5% (상승률 10%), 50% → 55% (상승률 10%)]

② 신규사업 등 최근 실적치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

- ㅇ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정성적으로 판단
- 피평가부서는 국내외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 평가 판단자료 제시

③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
- 단순히 법률 국회 제출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경우 불인정,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 난이도가 높고 당해 연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법률 제정 사업일 경우, 국회의 사정으로 법률 제·개정이 지연되고 관련부서의 노력이 충분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인정

④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였다면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

2-1. 추진계획 준수정도(2점, 정량·정성)

평정방법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추진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전체 추진계획 건수' 대비 '일정을 준수한 계획 건수' 비율을 반영하여 점수 산출
 - 산출산식 : 2 × 기한 내 완료한 계획 건수 전체 계획 건수
- * (예시)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추진계획'이 10건이고 그 중 8건만 계획된 일정 내 완료한 경우 : 2×0.8=1.6점 반영

세부

측정기준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 준수 여부
 - 계획을 기한 내에 완료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판단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아래 '예시' 참조)에는 그 사유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준수'로 인정 가능

(일정지연 관련 외생변수 예시)

- 국제적 환경(교역시장, 환율,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국제적 환경규제, 대북관계 포함) 등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상급기관(대통령자문위원회 등 포함) 등에 의한 추진방식 변경 등
-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된 경우
- 국회 파행 등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법률안 통과 등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 기타 관계기관과 연계된 일정으로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된 경우 등
- * '미준수'의 경우, 관리과제 담당부서에서 외생적 요인으로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정성평가 실시

평가근거

- ㅇ 당해 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 ㅇ 최종 실적보고서

평정방법

2-2. 이행 노력도(15점, 정성)

○ 관리과제의 목표 달성 및 성과 창출을 위해 담당부서가 추진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

a 투입 노력

- **ⓑ**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 ⓒ 협업 노력
- ⓐ, ⓑ, ⓒ 각 항목별 5점 척도로 평가, 점수 합계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5	4	3	2	1

② 투입 노력(5점): 예산·인력 투입 증가, 조직·기능 재조정, 관련 법령 ·규정·지침 개정, 제도신설 등을 위한 물리적 투입노력 정도

- 과제의 이행을 위해 예산, 인력, 조직 등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이 증가하였는가?
- 관련 법령·규정·지침을 개정하거나 제도신설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 투입 노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였는가?

세부 측정기준

- (b)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5점): 물리적 투입노력 이외 창의·혁신적인 업무 처리방식이나 절차의 개선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과제 성과 창출 기여 정도
 - 기존 방식과 확연히 차별되는 새로운 방식인가?
 -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는가?
 -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였는가?
- © 협업 노력(5점):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른 기관 및 부서, 민간부문 등과 협업노력 정도
 - 타 기관, 부서, 민간부문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협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였는가?

평가근거

ㅇ 최종 실적보고서

2-3. 상황변화 대응 노력도(5점, 정성)

- 정책 추진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
 - ⓐ 여건·상황변화 모니터링 충실성
 - **ⓑ** 갈등예방/해소 등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평정방법

- ① ⓐ,ⓑ 모두 '상'일 때 : 매우우수
- ② ②,⑤ 중 1개 '상', 1개 '중'일 때 : 우수
- ③ ⓐ,ⓑ 모두 '중'일 때 또는 1개 '상', 1개 '하'일 때 : 보통
- ④ ⓐ,ⓑ 중 1개 '중', 1개 '하'일 때 : 미흡
- (5) a),(b) 모두 '하'일 때 : 매우미흡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5	4	3	2	1

② 여건·상황변화 모니터링 충실성(상/중/하)

- 정책현장을 점검·확인하는 등 '모니터링'을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 * '모니터링'에는 정책현장 점검, 정책 관련 만족도·여론조사,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국회/언론 지적사항 등의 활동을 포함
-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 였는가?

세부 측정기준

ⓑ 갈등예방/해소 등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상/중/하)

- 정책 추진과정에서 관계 기관, 이해관계자, 정책수혜자 등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하였는가?, 또는 갈등상황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하였는가?
- * 이해관계자 등에게 정책 추진배경·필요성 등을 설득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 수정 등의 활동을 포함
- 갈등예방/해소 외에도 BH, 당, 관련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조율· 정책 수정 등을 통해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였는가?

평가근거

ㅇ 최종 실적보고서

2-4. 기관장 노력 지원 정도(3점, 정성)

평정방법

○ (부)기관장의 정책 추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는지 정도를 평가

구분	상	중	하
점수	3	2	1

○ (부)기관장의 현장방문, 정책소통, 국회설명 등 지원실적을 평가

- 과제목표 달성과 관련된 (부)기관장의 현장방문, 정책소통, 간담회, 토론회, 국회설명 등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는가?
- (부)기관장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 (부)기관장 활동 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였는가?

세부 측정기준

평가근거

ㅇ 최종 실적보고서

3-1. 성과지표 목표달성도(20점, 정량·정성)

- ㅇ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한 정도
 - 성과지표 등급은 성과지표TF에서 결정

12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시 추가·변경되는 지표에 대한 등급은 '22년도 자체평가시 별도평가

8

を	달성 (100% 이상)	일부 미달성 (100% 미만 90% 이상)	거의 미달성 (90% 미만 80% 이상)	미달성 (80% 미만)
S	20	18	16	14
Α	18	16	14	12
В	16	14	12	10
С	14	12	10	8

평정방법

- 초과달성(150% 이상)시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정성평가

10

- (±2점 이내, 단 20점을 초과할 경우 20점으로 반영)
- 성과지표가 다수인 과제는 '성과지표별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
 - * (예시) 성과지표1 20점, 성과지표2 10점인 경우, 15점 반영

세부 측정기준

ㅇ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한 정도

- 성과지표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정량으로 평가
- 단, 목표치 미달성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 달성률 저하 요인을 정성적으로 검토하여 조정

평가근거

ㅇ 최종 실적보고서

D

3-2. 정책효과(30점, 정성)

평정방법

○ 정책과제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및 장기적 효과를 정성적으로 평가

- ⓐ 당초 의도한 효과(25점): 해당 정책의 추진을 통해 의도한 정책 효과가 성공적으로 국민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과제목표 달성을 통해 정책수혜자가 체감하는 성과창출이 있었는가?
 - 정책수혜자인 국민의 실질적 편익 증진 효과가 있었는가?
 - 정책수행으로 경제·사회적 효과가 발생하였는가?
 - 언론(국내·외신) 등 외부기관 평가가 긍정적인가?
 -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효과가 있었는가?
 - * 당초 의도한 성과 이외에,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효과(부수적 효과)도 함께 평가

세부 측정기준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5~22	21~18	17~14	13~10	9~6

- (b) 장기적 효과(5점): 현재 발생한 정책성과의 지속가능성 정도(크기) 및 현재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성과의 크기 및 정도를 평가
 - 현재 발생한 정책효과의 크기가 크고 지속가능한가?
 - 현재 정책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정책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가? 그 크기는 얼마나 큰가?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5	4	3	2	1

평가근거

ㅇ 최종 실적보고서

3-3. 정책환류 성과(10점, 정량·정성)

평정방법

- 평가 및 중간점검 등에서 지적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개선을 하였는지 평가
 - ② '21년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였는지
 - **ⓑ** '22년 중간점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였는지
 - * 가점(+2점): 수시 정책컨설팅을 실시 여부(단, 10점을 초과할 경우 10점으로 반영)

ⓐ '21년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반영(5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점)	(4점)	(3점)	(2점)	(1점)
'21년 평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이에 따라 실제 성과가 발생한 경우	'21년 평가 결과 개선' 보완 필요사항이 충실히 이행 되었으나, 실제 성과는 부족한 경우	'21년 평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이 어느 정도 이행된 경우	'21년 평가 결과 개선' 보완 필요사항이 형식적으로 이행된 경우	'21년 평가 결과 개선' 보완 필요시항에 대한 노력 수행이 없는 경우

b '22년 중간점검 결과의 정책개선 반영(5점)

세부 측정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점)	(4점)	(3점)	(2점)	(1점)
'22년 상반기				
또는 분기별 점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이	필요사항이	필요사항이 어느	필요사항이	필요사항에 대한
충실히 이행되고	충실히	정도 이행된 경우	형식적으로	노력 수행이 없는
이에 따라 실제	이행되었으나,		이행된 경우	경우
성과가 발생한	실제 성과는			
경우	부족한 경우			

- * ⓐ, ⓑ 2개 항목 중 1개 항목에 대한 개선·보완 필요사항만 있는 경우, 1개 항목점수의 2배를 반영
- o (가점) 수시 정책컨설팅 실시 여부(+2점, 평가총괄팀에서 정량평가)

구분	2회 이상	1회	미실시
점수	2	1	0

* 대면, 영상회의를 통한 수시 정책컨설팅만 인정, 서면 불인정

평가근거

- ㅇ 최종 실적보고서
- ㅇ 수시 정책컨설팅 결과 보고서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2점)

평정방법

ㅇ 정책 추진성과 및 만족도 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차등 반영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2위)	(3~5위)	(6~9위)	(10~12위)	(13~14위)
점수	2	1.6	1.2	0.8	0.4

○ 국민들이 정책추진 필요성 및 성과 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 정책 필요성, 정책내용 적정성, 정책효과 달성도, 정책전반에 대한 만족도 등 4개 항목을 5점 척도로 설문
- 설문결과로 14개 과제의 순위를 결정한 후, 순위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0.4점 ~2.0점)

세부 측정기준

평가근거

ㅇ 설문조사 결과

붙임3 관리과제 실적보고서 양식

l - 1 - ① 관리과제명

1. 과제 개요

□ 추진배경(목적) → 0.5쪽 내외

Ò

-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추진배경(목적)'과 동일하게 작성
- □ 담당부서 현황 → 0.5쪽 내외

 - (인력) ***과 00명, ---과 00명 등 총 00명

담당부서	합계	과장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00명							
	00명							

- (예산) 총 00.0백만원
 - 주요예산 내역

 □ 주요 추진실적 및 정책성과 (12.31.기준) → 4.5쪽 내외
O
-
*
 과제 추진계획 이행 및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정책내용 및 일정을 기술 * 다년도 정책과제인 경우, 과거 실적과도 연계하여 기술 주요 법령 제·개정, 제도의 획기적 개선 등 과제 추진에 따른 정책성과와 기존 문제를 해결한 결과 등을 기술하되, 구체적·객관적 통계 데이터를 적극 활용, 수치화된 성과 위주로 작성 * 성과관련 통계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를 활용, 통계 출처는 반드시 병기할 것
□ 미흡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0.5쪽 내외
① (미흡사항)
-
☞ (개선·보완 사항)
② (미흡사항)
☞ (개선·보완 사항)
 ▶ 당초 계획한 일정을 미달성했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했던 내용 기술 * 추진일정 지연 또는 목표 달성 곤란 예상 * 당초 의도했던 수준보다 성과가 미흡했던 내용 *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 또는 적기 대응 미흡으로 국민 불편 초래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이견으로 인한 정책 지연 * 제도운영상 미비점으로 인한 정책효과 저하 * 홍보 부족 등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 야기 * 기타 국민여론 국회평가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되었던 부정적 사례 등

→ 각 꼭지 마지막(☞)에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보완방향을 반드시 기술
 * 개선조치 계획은 내년도 언제쯤 추진 예정인지 구체적 일정을 제시

2.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 정책집행

평가지표(2-1) : 추진계획 준수정도(2점)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 준수
8/1/1±(2-1): +C/11= C+8±(2-1)	여부

→ 2쪽 내외

ㅇ 과제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추진계획	추진실적	준수 여부
1/4분기	~~~~ (00월)	~~~~ (00월)	준수 / 미준수
1/4正기			준수 / 미준수
2/4분기			
2/42/1			
3/4분기			
3, 12 1			
4/4분기			
,,,,,,,,,,,,,,,,,,,,,,,,,,,,,,,,,,,,,,,			
	추진일정 준수율		

※ 외생요인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된 경우(미달성 사유가 외생요인에 의한 경우에 한해 작성)

지연 내용	지연 사유
<i>▶추진계획 내용</i>	▶ 전적으로 외생요인에 의해 지연되었는지 여부
(당초) ⊘월 → (이행) ⊘월	중심으로 작성

【근거자료】

*

4

▲ 투입 노력 평가지표(2-2) : 이행 노력도(15점) ▲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 협업 노력 → 6쪽 내외 1 투입 노력 Ò ②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Ò

③ **협업 노력**

Ò

-

*

【근거자료】

*

평가지표(2-3) : 상황변화 대응 노력도(5점)

- ▲ 여건·상황변화 모니터링 충실성
- ▲ 갈등발생 예방/해소 등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 3쪽 내외

① 여건·상황변화 모니터링 충실성

Ò

-

*

② 갈등발생 예방/해소 등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Ò

_

*

【근거자료】

*

평가지표(2-4) : 기관장 노력 지원 정도(3점)

▲(부)기관장 현장방문, 정책소통, 국회 설명 등 지원 정도

→ 1쪽 내외

Ò

-

*

【근거자료】

*

□ 정책성과 및 효과

평가지표(3-1) : 성과지표 목표달성도(20점)	▲목표치 달성 정도
-----------------------------	------------

→ 1쪽 내외

ㅇ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도

※ 목표치 150% 이상 달성한 경우

성과지표명	초과달성 사유
	▶ 전적으로 외생요인에 의해 미달성된 경우, 미달 성 사유 및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달성도 제고 를 위해 노력한 내용 등을 작성

※ 외생요인으로 인해 미달성한 경우(미달성 사유가 외생요인에 의한 경우에 한해 작성)

성과지표명	미달성 사유
	▶ 전적으로 외생요인에 의해 미달성된 경우, 미달 성 사유 및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달성도 제고 를 위해 노력한 내용 등을 작성

【근거자료】

*

평가지표(3-2) : 정책효과(30점) ▲ 당초 의도한 효과 ▲ 장기적 효과

→ 8쪽 내외

Ⅱ 당초 의도한 효과

Ò

_

*

② 장기적 효과

Ò

_

*

【근거자료】

*

 평가지표(3-3): 정책환류 성과(10점)
 ▲ '21년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반영

 → 3쪽 내외

 1 2021년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반영

 ○

 *

② 2022년 중간점검 결과의 정책개선 반영

Ò

_

*

③ 수시 정책컨설팅 실시 결과

Ò

-

*

【근거자료】

*

붙임4

자체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7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자체평가 이의신청서			
① 관리과제명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항목이 속한 관리과제)		
② 신청 부서			
③ 신청 취지	○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 요청하고자 하는 평가항목 또는 결과 (예: '2-3. 상황변화 대응 노력도' 항목 재검토 요청)		
④ 신청 이유	○ <i>신청취지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상세히 서술</i> 청 이유 ○ ○		
⑤ 첨부 서류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 및 자료제목 기재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3. 1			
	부서장: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서명 또는 역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귀중		